

1. 5-06-0552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(징구용) 개정대비표(안)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 1 조(적용범위) ~ 제 3 조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체결 및 변경) (생략)	제 1 조(적용범위) ~ 제 3 조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체결 및 변경) (좌동)	
제 4 조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해지)	제 4 조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해지)	
①이용자가 결제제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<u>서면으로 은행에</u>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.	①이용자가 결제제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<u>은행에</u>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.	공정위 시정 요청 사항 반영
②~④ (생략)	②~④ (좌동)	
제 5 조(이용시간)~제 10 조(결제자금 부족시 결제절차) (생략)	제 5 조(이용시간)~제 10 조(결제자금 부족시 결제절차) (좌동)	
제 11 조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<u>정보집중 및 제한</u> )	제 11 조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<u>정보집중</u> )	조 제목 변경
① (생략)	① (좌동)	
② 제 1 항의 경우 이용자 앞 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생략하기로 합니다.	② <u>본 약관의 체결에 의하여 제 1 항에 포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</u>	문구 수정
③ 은행은 제 1 항에서 수집된 미결제 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결제제도 이용을 아래와 같이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	(삭제)	항 삭제
가. 구매기업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제한		(제 11 조 2 의 신설)
나. 기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판매기업의 외담대 취급 제한		
다.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재산정		
라. 구매기업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따른 은행의 결제제도 이용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		

<p>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구매기업의 본 결제제도 이용</p> <p><u>제한</u></p> <p>(신 설)</p>	<p><b>제 11 조의 2(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미결제 및 거래정지)</b></p> <p>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미결제 처리합니다.</p> <p>1.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</p> <p>2. 무거래</p> <p>3. 사고신고서 접수(계약불이행, 피사취, 합의불가)</p> <p>4. 법적제한</p> <p>② 은행은 제 1 항의 미결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발행인인 구매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거래정지 를하며, 그에 따른 거래정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1. “예금부족” 미결제로서 은행으로부터 입금통보가 없을 때 : 미결제일로부터 제 3영업일</p> <p>2. “무거래” 로 미결제된 때 : 미결제일의 익영업일</p> <p>3. “사고신고서 접수” 또는 “법적제한”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미결제로서 사고신고 또는 지급정지가처분 담보금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 : 미결제일로부터 제 3영업일</p> <p>4. 모든 은행을 통하여 1 년간 6 회 이상 입금통보된 “예금부족”, “사고신고서 접수” 또는 “법적제한”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미결제가 있을 때 : 미결제일의 익영업일</p> <p>③ 제 2 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발행인은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.</p>	<p>조 신설(미결제 사유 및 거래정지일 명시)</p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p>제 12 조(거래내용의 확인) (생 략)</p> <p>제 13 조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) ① ~ ③ (생 략) ④ (생 략) 가. ~ 나. (생 략)</p> <p>제 14 조(손실부담 및 면책) ① ~ ④ (생 략) ⑤ 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 가. ~ 라. (생 략)</p> <p>제 15 조(통지의 효력) (생 략)</p> <p>제 16 조(약관변경) ①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의 홈페이지에 1 개월 이상</p>	<p>④ 기타 미결제 사유 경합시의 처리, 거래정지 및 미결제 구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금융결제원 B2B 업무 규약 및 동 규약 시행세칙에 따릅니다.</p> <p>제 12 조(거래내용의 확인) (좌 동)</p> <p>제 13 조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) ① ~ ③ (좌 동) ④ (좌 동) 1. ~ 2. (좌 동)</p> <p>제 14 조(손실부담 및 면책) ① ~ ④ (좌 동) ⑤ 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 1. ~ 4. (좌 동)</p> <p>제 15 조(통지의 효력) (좌 동)</p> <p>제 16 조(약관변경) ①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기로 합니다. (삭 제)</p>	<p>호 표기방식 변경</p> <p>문구 수정</p> <p>호 표기방식 변경</p> <p>공정위 시정 요청 사항 반영</p>
---	---	---

<p>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리기로 합니다.</p> <p>② (생략) (신설)</p>	<p>(좌동)</p> <p>③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	
<p>③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(신설)</p>	<p>④이용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⑤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	
<p><b>제 17 조(이의 제기)</b></p> <p>(생략)</p>	<p><b>제 17 조(이의 제기)</b></p> <p>(좌동)</p>	
<p><b>제 18 조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금융결제원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을 적용합니다.</p>	<p><b>제 18 조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</b></p> <p>① (좌동)</p> <p>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금융결제원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을 적용합니다.</p>	<p>법률명 변경</p>
<p><b>제 19 조(준거법)</b></p> <p>(생략)</p>	<p><b>제 19 조(준거법)</b></p> <p>(좌동)</p>	

2. 시행일 : 2015년 6월 29일

3.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 여부

(1) 구매기업 : 고지기한 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시행일 이전 가입 고객에 대하여도 적용

(2) 판매기업 : 시행일 이전 가입 고객에 대하여도 적용